

의안번호	2214856
의 퇴 인	임호선 의원
회 답 일	2026. 4. 14.
추계번호	25B6699

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반려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2억 8,400만원(연평균 5,7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(제7조)	140	-	-	-	-	140	28
반려동물복지위원회(안 제8조)	29	29	29	29	29	144	29
합계	169	29	29	29	29	284	57

주: 1.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연구용역 방법·규모,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 학대 방지와 반려동물의 보호·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국가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·관리와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2	안 제7조(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1. 반려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. 반려동물의 보호·복지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. 반려동물을 보호·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.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. 반려동물 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. 동물의 보호·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.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. 그 밖에 반려동물의 보호·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	
3	안 제8조(반려동물복지위원회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함(제1항) 1.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. 반려동물복지정책의 수립, 집행,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.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반려동물의 보호·복지와 관련된 사항 4. 그 밖에 반려동물의 보호·복지에 관한 사항수 있음(제1항)	의무규정
		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4	안 제9조(시·도 반려동물복지위원회)	시·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시·도 단위의 반려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·복지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·조정하기 위하여 시·도 반려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. 다만, 시·도에 반려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반려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5	안 제14조(반려동물 의료제도 개선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의료제도 개선과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보험가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부담하는 동물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6	안 제15조(사전 의무교육)	반려동물을 소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반려동물 양육 교육을 받아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17조(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시험)	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8	안 제22조(공설 동물장묘시설의 특례)	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(이하 “공설동물장묘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.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함(제1항)	재량·의무 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9	안 제24조(장묘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·관리의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(이하 “장묘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0	안 제34조(교육)	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영업자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	제3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제2항의 정기 교육 외에 동물의 보호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11	안 제38조(교육 및 홍보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·홍보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12	안 제4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반려동물복지 진흥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림축산 또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—	• 미대상: 반려동물 학대 방지와 반려동물의 보호·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,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2	안 제7조(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	○	•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
3	안 제8조(반려동물복지위원회)	○	•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
4	안 제9조(시·도 반려동물복지위원회)	—	• 미대상: 제정안은 시·도지사가 시·도 단위의 반려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·복지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·조정하기 위하여 시·도 반려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, 시·도에 반려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반려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「동물복지법」 제8조 ¹⁾ 에 따른 시·도동물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,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5	안 제14조(반려동물 의료제도 개선 등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—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 의료제도 개선과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부담하는 동물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반려동물 의료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업계획과 보험료 지원 대상·기준·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6	안 제15조(사전 의무교육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— 제정안은 사전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7	안 제17조(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)	—	• 미대상: 현행 「동물보호법」 제31조와 동일한 조항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						
8	안 제22조(공설 동물장묘시설의 특례)	—	• 미대상: 현행 「동물보호법」 제71조와 동일한 조항으로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						
9	안 제24조(장묘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	—	• 미대상: 현행 「동물보호법」 제72조와 동일한 조항으로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						
10	안 제34조(교육)	—	• 미대상: 현행 「동물보호법」 제82조와 동일한 조항으로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						
11	안 제38조(교육 및 홍보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— 현시점에서는 국민의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·홍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— 참고로,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관련 문화 조성 사업으로는 다음의 사업이 있음 (단위: 백만원) <table><tr><th>사업명</th><th>사업내용</th><th>'26예산</th></tr><tr><td>동물복지 인식개선</td><td>동물복지 관련 법령의무교육 및 대국민 인식개선, 실태조사 실시 등</td><td>2,616</td></tr></table> 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	사업명	사업내용	'26예산	동물복지 인식개선	동물복지 관련 법령의무교육 및 대국민 인식개선, 실태조사 실시 등	2,616
사업명	사업내용	'26예산							
동물복지 인식개선	동물복지 관련 법령의무교육 및 대국민 인식개선, 실태조사 실시 등	2,616							
12	안 제4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— 현 시점에서는 업무 위탁 대상 기관, 업무 위탁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						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1) 「동물보호법」

제8조(시·도 동물복지위원회) ① 시·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시·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, 동물의 적정한 보호·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·조정하기 위하여 시·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에 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② 시·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7조)

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유사사례를 참고하면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억 4,000만원(연평균 2,800만원)으로 추계
 - － 추계기간 중 첫해에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내용	연도	금액
동물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·기초조사 및 기준·방안 등 마련	2024	140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[표 3]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	140	-	-	-	-	140	28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반려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반려동물복지위원회 설치(안 제8조)

□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반려동물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두고,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

○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의 구성·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추계

- 제정안의 위원 구성 요건²⁾을 고려하여 위원회 정원 20명 중 16명(80%)를 민간위원으로 가정
- 분과위원회는 1개가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위원 구성은 본 위원회의 50% 규모로 가정(정원 10명 중 민간위원 8명)
- 회의개최 횟수는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각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- 회의참석 사례금(안전 검토비 등 포함)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³⁾

※ 이때, 회의참석 사례금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4] 반려동물복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(안)

(단위: 명)

구분	주요 기능 (안 제8조제1항)	총 인원	민간위원 (80%)
반려동물복지위원회 (본위원회 1개)	1.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. 반려동물복지정책의 수립, 집행,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.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반려동물의 보호·복지와 관련된 사항 4. 그 밖에 반려동물의 보호·복지에 관한 사항	20	16
분과위원회(1개)	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	10	8

주: 분과위원회는 본위원회의 50% 규모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

자료: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) 안 제8조(반려동물복지위원회)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(互選)된 민간위원으로 하며,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·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반려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
3. 그 밖에 반려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

3)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,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내로 편성(기획재정부,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, 2025. 5., 222쪽)

[표 5]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: 2023~2025년

(단위: 명, 회)

	위원 (A=B+C)	공무원 (B)	민간 위원 (C)	정원대비 민간위원 비율 (C/A)	최근 3년간 회의개최 횟수			연평균 (3년)
					2023	2024	2025	
농어업·농어촌 특별위원회	29	5	24	82.7%	4	4	2	3.3
농림식품과학기술 위원회	28	4	24	85.7%	5	6	4	5
평균	28.5	4.5	24	84.2%	9	10	6	4.1

자료: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」 2025.10.

□ 추계 결과, 반려동물복지위원회 구성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1억 4,4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6] 반려동물복지위원회 구성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명, 회, 만원/명·회 백만원)

	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본위원회 (1개)	민간위원 수(A)	16	16	16	16	16	—	—
	회의개최 횟수(B)	4	4	4	4	4	—	—
	사례금 단가(C)	30	30	30	30	30	—	—
	소계 (D=A×B×C)	19.2	19.2	19.2	19.2	19.2	96	19.2
분과위원회 (1개)	민간위원 수(E)	8	8	8	8	8	—	—
	회의개최 횟수(F)	4	4	4	4	4	—	—
	사례금 단가(G)	30	30	30	30	30	—	—
	소계 (H=E×F×G)	9.6	9.6	9.6	9.6	9.6	48	9.6
합계(I=D+H)		29	29	29	29	29	144	29

주: 1.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stone@assembly.go.kr